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2025년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보고서

# 2025년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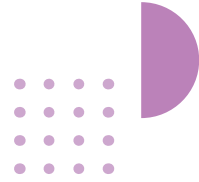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01동 1층  
053-803-623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



# 2025년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보고서



# Contents 2025년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보고서

Preface

발간사 ..... 4

## 1

###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소개

1.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연혁 ..... 8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 현황 ..... 9

## 2

### 복지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가. 고충민원 현황 ..... 14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 17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가. 일부 수용 민원 사례 ..... 18  
나.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 19

### 3

## 인권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 고충민원 현황 .....	24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가. 상담 종결 .....	25
나.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	26

### 4

##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활동현황

1. 복지옴부즈만 활동일지 및 활동사진 .....	30
2. 인권옴부즈만 활동일지 및 활동사진 .....	33
3.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홍보 현황 .....	36

### 5

##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현황 .....	40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44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50
4. 국가인권위원회법 .....	78
5. 고충민원서식 .....	97

## 발간사 PREFACE

비상계엄 선포 논란과 함께 시작된 2025년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조기대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장의 조기사퇴 등 커다란 변화의 한해 였다고 기억합니다.

특히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전임 시장의 사퇴와 정권의 교체, 시장 대행 체제에 따른 위축감과 행정 공백의 우려가 더해진 대구 시민들의 마음은 더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은 대구시민의 복지와 인권부분에서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계층의 고충과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25년은 고충민원 창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접수된 민원이 지역별 담당 부서로 전달되어 반복적인 민원이 감소하고 담당 부서로 이관된 민원의 수가 확연히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좀 더 외부 지향적인 홍보활동과 사회복지 현장 방문, 인권 상담과 교육 등 외부 활동을 확장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원을 종합해 보면 복지 분야는 갑작스러운 신체장애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기초 수급권 신청 요건 미충족에 따른 생활 곤란, 노후주택 보유에 따른 기초노령수당의 감액 또는 제외로 인한 생활 곤란 등의 민원이 많았으며, 인권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간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복지옴부즈만은 해당 민원에 대해 권고하거나 처리 가능한 관련 부서로 이관·처리토록 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해 왔으며, 인권옴부즈만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생활인과 직접 상담하고 인권교육을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자문의견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해결에 노력해왔습니다.

2026년도에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복지·인권 민원의 처리와 복지행정의 합리적 개선, 시설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찾아가는 순회 상담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작은 고충도 귀 기울여 행정기관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인권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궁극적으로는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2025년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운영 성과와 민원 처리 결과 등을 담은 본 운영보고서를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 대구시민에게 알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와 원활한 옴부즈만 활동을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구광역시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김 광 환**
-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 **정 연 걸**



# 01

##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소개



1.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연혁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 현황



## 1.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연혁

- 2006. 12. 06.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 확정
- 2008. 12. 01. 「대구광역시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 2009. 03. 10. 제1대 복지옴부즈만(김현익) 임용
- 2009. 06. 08. 제1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7명)
- 2011. 05. 02. 제2대 복지옴부즈만(정정화) 임용
- 2011. 05. 30.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1. 06. 21. 제2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2. 05. 10.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2013. 05. 02. 제3대 복지옴부즈만(정정화) 재임용
- 2013. 06. 21. 제3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5. 05. 11. 제4대 복지옴부즈만(변창식) 임용
- 2015. 06. 21. 제4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7. 05. 10.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2017. 05. 11. 제5대 복지옴부즈만(변창식) 재임용
- 2017. 06. 21. 제5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7. 09. 11. 제1대 인권옴부즈만(이명주) 임용
- 2018. 01. 24. 제1기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9. 05. 21. 제6대 복지옴부즈만(방성수) 임용
- 2019. 06. 21. 제6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9. 09. 11. 제2대 인권옴부즈만(이명주) 재임용
- 2020. 01. 24. 제2기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21. 05. 21. 제7대 복지옴부즈만(방성수) 재임용
- 2021. 06. 21. 제7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21. 10. 01. 제3대 인권옴부즈만(박무늬) 임용
- 2022. 01. 24. 제3기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22. 09. 01. 제8대 복지옴부즈만(이기량) 임용
- 2022. 09. 15.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폐지
- 2023. 10. 01. 제4대 인권옴부즈만(박무늬) 재임용
- 2024. 01. 29. 제4대 인권옴부즈만(박무늬) 의원면직
- 2024. 09. 01. 제9대 복지옴부즈만(이기량) 재임용
- 2025. 02. 24. 제5대 인권옴부즈만(정연걸) 임용
- 2025. 05. 01. 제10대 복지옴부즈만(김광환) 임용

##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 현황

### 가. 도입배경

1994년 중앙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에 따른 옴부즈만 기능 일부가 도입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 제도를 복지영역에 특화시켜 2009년 4월, 전국 최초로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실시하게 되었다.

복지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독립되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복지행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제도를 통하여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복지현장의 부정·비리를 근절하여 건전한 지역복지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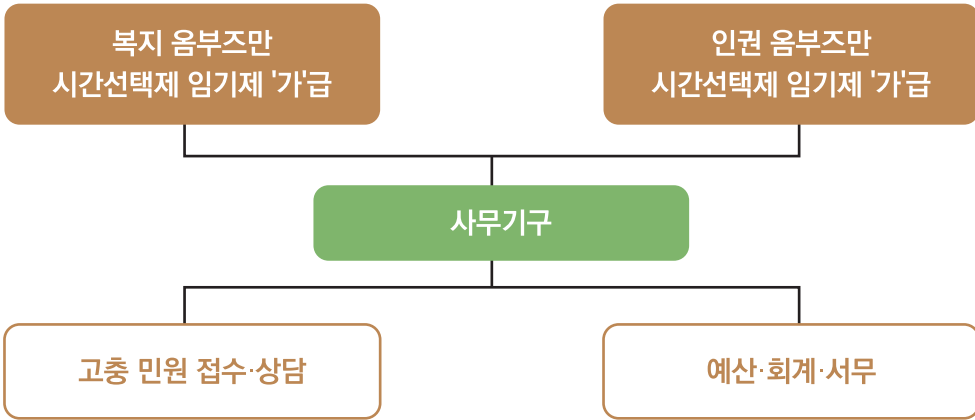
인권옴부즈만은 2017년 시립희망원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희망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분야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설치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나. 형태 및 조직

대구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행정부형으로, 의사결정방식은 독임제이다. 업무는 복지 및 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영역에 특화함으로써 행정부형 독임제 특수옴부즈만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직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각 1명, 행정지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직무범위

대구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직무범위는 ①행정기관(민간위탁기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나 개인이 수행한 복지 및 인권 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②복지 및 인권 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③복지 및 인권 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④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 및 인권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⑤복지 및 인권 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⑥복지 및 인권 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⑦그 밖에 복지 및 인권 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이다.

## 라. 관할기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할기관은 ①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②자치 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③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④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복지 분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이다.

## 마.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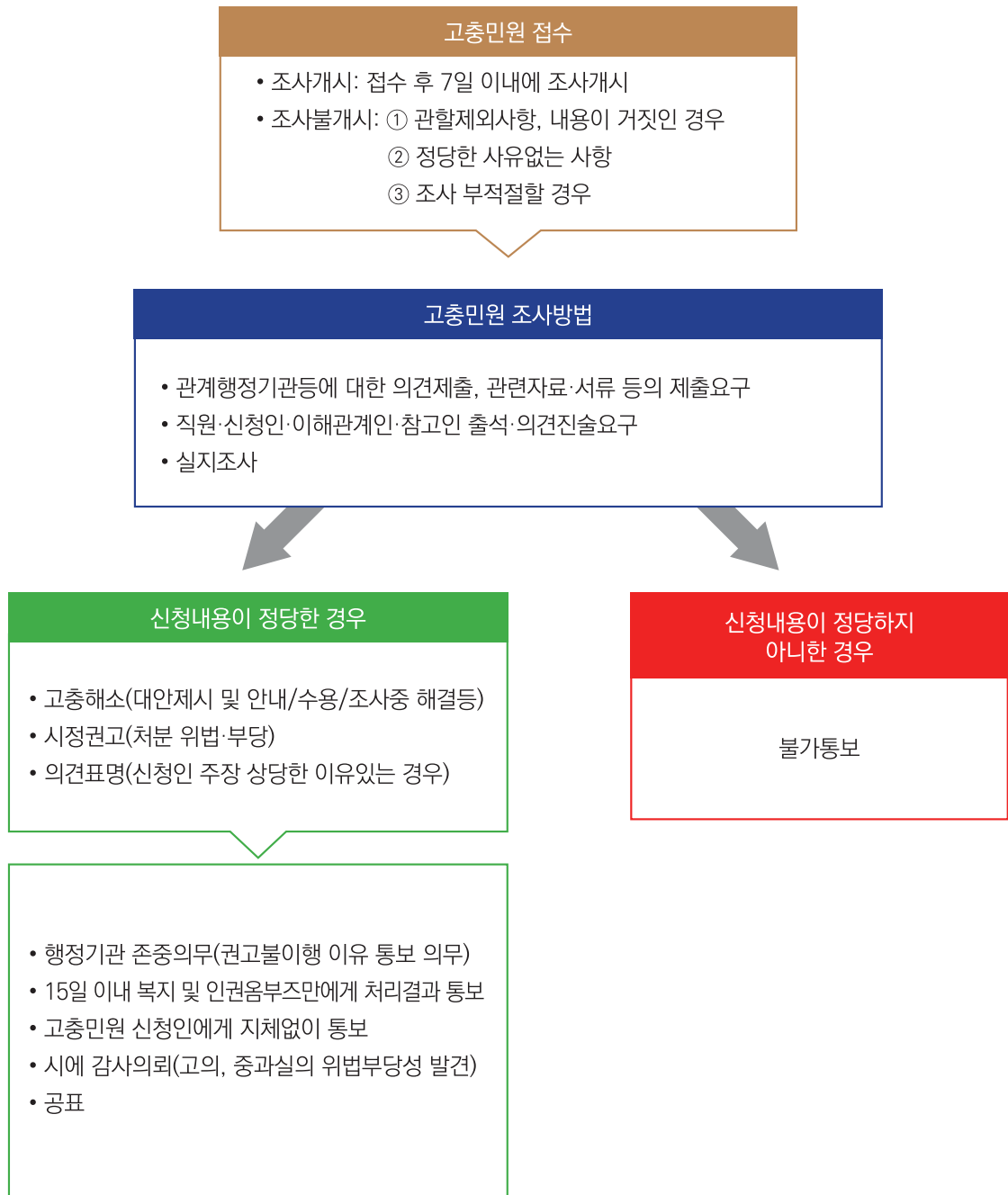
고충민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면,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가능하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조사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의견제출, 관련 자료, 서류 등 제출 요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사항과 관계있는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게 된다.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 권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도개선 등 의견표명을 하게 되는데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 시에 감사를 의뢰하게 된다.

### <고충민원 처리유형>

처리유형	내 용
시정권고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
의견표명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합의의 권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 권고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에 의해 조정서 작성
각하 또는 이송	판결 등에 권리 관계가 확정되거나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속하는 사항

##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 02

## 복지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가. 고충민원 현황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가. 수용 민원 사례

나.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 가. 고충민원 현황

### 1) 연도별 현황

구분	접수 건수	조사 결과 처리 현황											
		복지 분야							타 분야				
		소계	수용·대안 제시 및 안내	불가	조사 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 중	권고·의견표명		소계	대안 제시 및 안내	불가	조사 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 중
수용	불가												
2025	32	16	16	-	-	-	-	-	16	16	-	-	-
2024	183	9	8	-	-	-	1	-	174	174	-	-	-
2023	120	12	12	-	-	-	-	-	108	108	-	-	-
2022	111	20	17	-	3	-	-	-	91	90	-	1	-
2021	91	7	7	-	6	-	-	-	84	79	-	5	-
2020	113	68	62	-	6	-	-	-	45	44	-	1	-
2019	107	32	30	1	1	-	-	-	75	74	1	-	-
2018	185	56	50	2	3	-	1	-	129	119	4	5	1
2017	135	52	47	1	3	-	1	-	83	77	6	-	-
2016	149	48	40	7	1	-	-	-	101	90	9	2	-
2015	117	49	43	6	-	-	-	-	68	61	7	-	-
2014	60	53	33	13	1	-	4	2	7	7	-	-	-
2013	71	46	31	10	1	-	4	-	25	25	-	-	-
2012	47	47	27	10	5	-	3	2	-	-	-	-	-
2011	37	37	18	9	7	-	2	1	-	-	-	-	-
2010	44	44	16	11	12	-	3	2	-	-	-	-	-
2009	38	38	18	8	3	-	4	5	-	-	-	-	-

## 2) 고충민원 분야별 분석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 민원은 총 32건으로 이 중에 복지 분야는 16건이고, 타 분야도 16건으로 모두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접수건수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타 분야의 1인 다수 민원건(작년 160건정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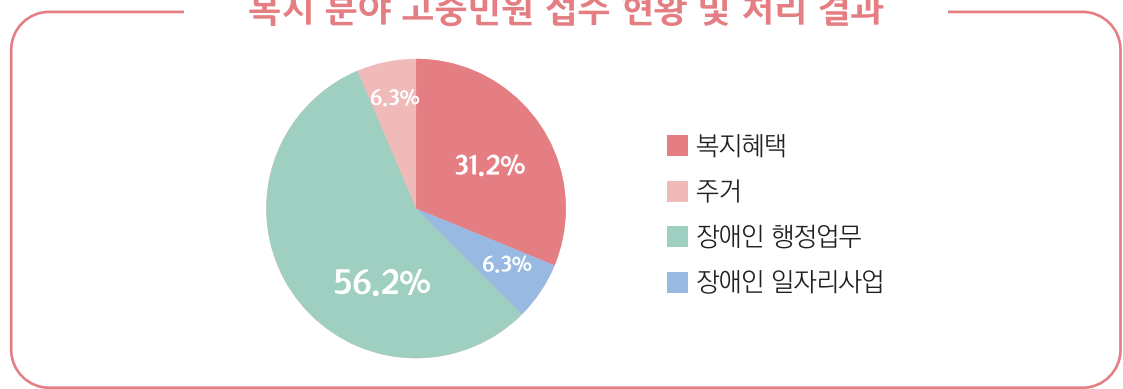
### (1) 복지 분야 고충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복지 분야에 접수된 고충민원 16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 및 지원금 등 복지혜택 5건, 주거관련 1건, 장애인 행정업무 지원 관련 9건, 장애인 일자리 사업 1건이었습니다.

#### <복지 분야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현황>

분류	복지혜택	주거	장애인 행정업무	장애인 일자리사업	계
건수	5	1	9	1	16
비율(%)	31.2%	6.3%	56.2%	6.3%	100

#### 복지 분야 고충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복지 분야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권고·의견표명을 하거나,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부수용과 함께 적극적인 고충해결의 일환으로 대안제시 및 안내를 한 고충민원이 16건으로 100%이었습니다.

#### <복지 분야 고충민원 분야별 처리 결과>

분류	수용·대안 제시 및 안내	불가	조사 중 해결	조사(처리) 진행 중	조정	권고·의견표명	계
건수	16	-	-	-	-	-	16
비율(%)	100	-	-	-	-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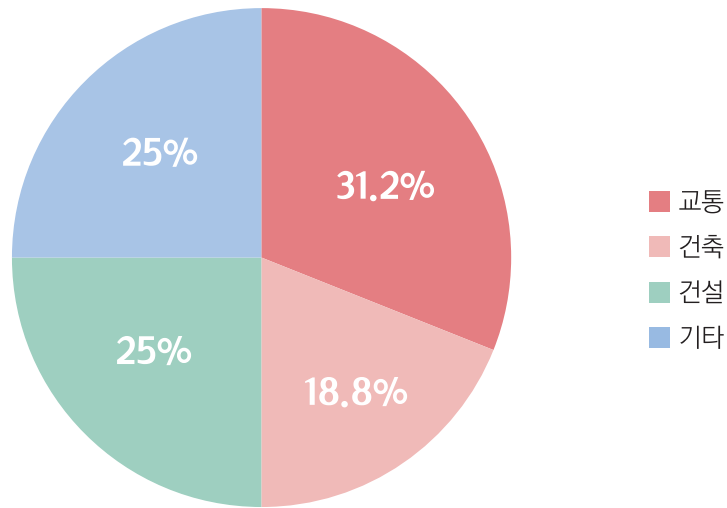
## (2) 타 분야 고충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타 분야에 접수된 고충민원 16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5건, 건축 3건, 건설 4건, 기타 4건이었습니다.

### <타 분야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현황>

분야	교통	건축	건설	기타	계
건수	5	3	4	4	16
비율(%)	31.2%	18.8%	25%	25%	100

### 타 분야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고충해결의 일환으로 대안제시 및 안내를 한 고충민원이 16건이었습니다.

### <타 분야 고충민원 처리 결과>

분류	대안제시 및 안내	불가	조사 중 해결	조사(처리) 진행중	계
건수	16	-	-	-	16
비율(%)	100	-	-	-	100

## 나. 주요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 복지 분야

신청취지	처리결과
리프트 장착 장애인이동차량 이용 불편	일부 수용 (부서 협업)
주민센터의 휠체어 대여나 목발대여에 대한 광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장애인 차량구매 문의	안내

### 타 분야

분야	신청취지	처리결과
교통	지하철 1호선 임산부 배려석 민원	안내
교통	무의미한 임산부 배려석, 최악의 대구철도공사 응대	안내
교통	나드리콜 차량에 대해	안내
교통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건설	혁신도시 인도 보도블럭 위험성에 따른 조치 요청	이송
감사	대구 북구 야외 스케이트장 보상안 관련	이송
건설	치료비 보상 및 인도에 좌판 철거	이송



##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 가. 일부 수용 민원사례 (부서 협업)

신청일자	2025년 6월 17일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6		
성 명	변**	생년월일	
전화번호	010-****-2489	접수방법	기관방문 접수
신청의 취지	나드리콜 이용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리프트장착 특별교통수단은 심한보행장애인만 이용신청하도록 방안 강구		
신청의 사유	<p>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리프트장착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이 보행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장애인도 이용하고 있어 보행장애인이 이용하려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실제적인 이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p> <p>일반장애인은 나드리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행장애인은 리프트 장착 차량만 이용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이동권 제한이 되고 있어 시청 담당부서에서 일반장애인들에게 리프트차량 이용자제를 요청하는 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안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보행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길 바라는 민원임.</p>		
처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동차량 운영 관련 조례 검토 1)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li> <li>- 나드리콜 운영 현황 파악 1)나드리콜 차량 현황 - 총534대(특별교통수단 218, 교통약자콜택시 316) 2)이용대상 - 등록회원 37,881명(노약자 12,761 심한 지체 뇌병변 9,500) 3)휠체어 이용고객 - 11,494명(30.1%)</li> <li>- 택시물류과 팀장에게 민원 내용 안내 및 조치계획 회신 1)“휠체어 고객 우선 강제배차” 추진 2)노약자 이용건 수 증가에 따른 등록 요건 강화 진단서→장기요양 인정서(1-3등급) 요금인상 (3,300원→4,500원)</li> </ul>		
처리결과	- 민원인에게 전화 통화 : 조치계획 설명, 수용		
조 사 일	2025. 6. 17	통 지 일	2025. 6. 18

## 나.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 주민센터의 휠체어 대여나 목발대여에 대한 광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충요지:**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민센터의 휠체어 대여나 목발대여에 가능한지에 대하여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광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결과:

- (타 기관 이송)
- 9개 구·군으로 이송

### 장애인 차량 구매 문의

**고충요지:**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량구매건으로 문의남깁니다.

장애인은 제 딸이며, 5세입니다. 청각장애로 중증에 해당됩니다. 아이와 제가 공동명의로 차량 구입시 혜택이나 대출부분이 궁금하며 차량 구매시 차량선택에 제한이 되는부분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1. 먼저 대구시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장애인 차량 구매 관련 혜택 및 대상차량, 차량 구입 대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장애인 차량구매시 관련 세제 혜택은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미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7~10인승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등이 해당되며 세제 혜택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구군(세무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구입 관련 대출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귀하께서는 5세 자녀로 사업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차량등록사업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복지과(053-803-328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지하철 1호선 임신부 배려석 민원

**고충요지:** 매일 오전 7시 30분마다 1호선 율하역에서부터 2호선 내당역까지 출퇴근 하고 있는 임신부 입니다. 출퇴근마다 매번 임신부 배려석에 아가씨, 아주머니, 아저씨 등 모든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좌석이 비어있음에도 임신부 배려석에 일부러 앉아서 자리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임산부 뺏지도 매번 잘보이게 착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계속 서있어도 끝까지 양보를 안해주십니다. 부산역에는 핑크라이트도 설치해줘서 임산부가 가면 소리 또는 표시가 나게끔 해주는데 왜 대구는 시민의식도 이상하고. 아무도 배려를 안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심각한 문제 입니다. 미리 자리를 비워놓진 않아도 적어도 피해서 앉거나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주는게 당연한건데 아무리 안내방송이 나와도 아무도 자리를 안비킵니다. 안내방송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듯 보입니다.

애초에 시민의식 제고가 문제라면 대구는 진짜 임산부가 와서 아이를 낳고 살수가 없는 곳입니다. 차라리 시민의식 제고를 바랄 바에야 '핑크라이트' 등 제발 설치해서 대구에 있는 임산부들이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교통비 지원을 늘려서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할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한달에 3만원밖에 안되는 지원비로는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도 불가합니다. 진짜 지원비도 서울보다 적고. (서울은 1년에 70만원). 지하철배려도 없고 심지어 노약좌석에 앉으면 반대로 눈치를 줍니다. 임산부는 어떻게 배려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임산부 배려석의 목적이 뭔가요? 왜 반대로 임산부들이 눈치를 보면서 지하철을 타야 하는거죠?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고. '핑크라이트'설치 의견을 수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처리결과:

- (타 기관 이송)
- 대구교통공사 이송

## 무의미한 임신부 배려석, 최악의 대구철도공사 응대

**고충요지:** 아침 오전7시 30분에 늘 1호선 열차를 타면 임신부 배려석에 아주머니, 아저씨, 아가씨, 어린 애들 조차도 앉아있습니다. 어떠한 배려도 양보도 없습니다.

부산은 임신부 알람 이라도 있는데 여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양보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지원도 없으면서 어떠한 의미로 지원을 한다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자리를 비워주거나. 알람음이 들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본인 독감이라 바로 업무처리 어렵다면서 꼭 전화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전화도 없으시네요. 응대가 엉망 진창입니다.

도대체 몇번씩이나 민원을 내야 반영이 되는지. 그저 임신부배려석이 의무가 아니라는 핑계로는 말이 안되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응대 제대로 하시고 알람음이 설치될수 있도록 검토 하신 다음에 연락주세요.

### ✓ 처리결과:

- (타 기관 이송)
- 대구교통공사 이송

## 나드리콜 차량에 대해



**고충요지:** 나드리콜 휠체어 차량은 휠체어를 타고다니는 장애인들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걸까요? 장애인이라고 해도 충분히 혼자서 걸어다니고 다른 교통수단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분들 마저 휠체어차량을 이용을 하니깐 정작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휠체어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이 더 길어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날이 추운 겨울무렵에 나드리콜 휠체어차량을 타고 외출 했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 밖에서 차를 2시간 넘게 덜덜 떨면서 기다렸던 적이 있는데 휠체어라 아무차나 타고 이동할 수 없어 힘든적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혼자서 보행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일반 택시를 연계해서라도 휠체어차량은 이용제한을 했으면 하고 건의해 봅니다.

### ✓ 처리결과:

1. 대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특장차량 분리배차 건의"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대구시 나드리콜 운행차량은 총 534대이며 특별교통수단(특장차량) 218대, 교통약자 콜택시 31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의해주신 나드리콜 특장차량을 휠체어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차량으로 운행할 경우,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직영 인력으로 운영되는 특장차량과는 달리 택시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운행되는 교통약자콜택시만으로는 전체 나드리콜 회원의 70%인 비휠체어 이용자들의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전체 이용자들의 평균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나드리콜 사업 효율성을 심히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계약 체결된 개인·법인택시(316대)가 교통약자콜택시와 일반영업을 병행
  - 이에, 우리 시에서는 휠체어 이용자들의 배차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부터 "나드리콜 휠체어 배려 캠페인"을 시행하여 배차 접수 시 특장차량 또는 콜택시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개선한 결과, 휠체어 이용고객의 대기시간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 ※ 특장차량 대기시간(휠체어 고객) : (24. 8.) 32분 → (25. 2.) 24분
  - 앞으로도 대구시는 노약자 회원 등록 합리화 시행(25. 7.), 주기적인 노후 특장차량 교체 및 배차 관제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물류과 김기백(☎ 053-803-486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충요지:** 교통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렇게 보냅니다. 요즘 신호등앞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노안으로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앞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꼼꼼히 생각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많이 줄일수 있을까? 생각하던 도중 , 신호등 앞에 레이저 빛을 달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바뀌기 1초전에 레이저 빛을 쏘는 겁니다. 그럼 차들이 레이저 빛을 보고 멈추게 될것입니다. 그럼 과속도 안하고 노인들은 그 빛을 보고 멈출것입니다. 생각보다 연령이 높으신분들은 신호등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빛은 인지하기 쉽고 무엇보다 그걸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면 분명히 대구도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제일 먼저 시행한 도시가 될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사소한 아이디어도 저처럼 하나하나 해결할수 있는 대구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처리결과:

1. 평소 우리 시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신호등 앞 레이저 설치'건의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도로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은「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신호등 앞 레이저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로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상기 설명드린 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교통정책과(☎ 053-803-475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03

## 인권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 고충민원 현황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 가. 상담 종결
  - 나.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 가. 고충민원 현황

구분	접수 건수	조사 결과 처리 현황											
		인권 분야							타 분야				
		소계	수용 · 대안 제시 및 안내	불가	조사 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 중	시정권고 의견표명		소계	대안 제시 및 안내	불가	조사 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 중
수용	불가												
2025	11	11	11	-	-	-	-	-	-	-	-	-	-
2024	2	2	2	-	-	-	-	-	-	-	-	-	-
2023	2	2	2	-	-	-	-	-	-	-	-	-	-
2022	12	12	12	-	-	-	-	-	-	-	-	-	-
2021	2	2	1	-	-	-	1	-	-	-	-	-	-
2020	4	-	-	-	-	-	-	-	4	4	-	-	-
2019	23	12	11	-	-	-	1	-	11	11	-	-	-
2018	32	14	12	-	-	-	2	-	18	18	-	-	-
2017	41	14	14	-	-	-	-	-	27	27	-	-	-

##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 가. 상담 종결 사례

#### 희망원 생활인 가족 찾기 지원



**상담배경:** 시민단체 성명 및 관련 언론보도 (2025.2.19.)

- 대구희망원 3개 시설의 거주인 527명 중 283명(54%)이 10년 이상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
- 입소 이후 지문조화로 신원을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무연고 생활인이 희망마을 14명과 보석마을 23명 등 37명임.
- 희망원은 수용시설 역할에 안주하면서 행정지침에 따라 지문조화만 진행하고 생활인의 기본적인 신원확인고 가족 찾기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은 찾기 힘들.
- 지속적인 개별 심층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 등록과 '정부 24시 헤어진 가족 찾기신청제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1조의2(기본이념),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5조(인권증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4(지도·감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신고의무 등)
-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증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설치), 제4조(직무), 제15조(고충민원 조사방법)



**상담결과:**

- 희망원 3개마을 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및 유전자 정보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인 2명이 가족을 찾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다만, 실종 장애인 등이 가족을 찾을 때 유전자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2025. 4. 1. 현재 희망마을과 보석마을 무연고 생활인 39명 중 30명은 경찰서에 유전자정보 등록이 확인되나, 나머지 9명은 유전자정보를 채취하지 않았거나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유전자정보 등록에 대해 희망마을과 보석마을의 관리를 요청하여 9명에 대해 2025. 4. 14. ~ 4. 15. 양일간 유전자정보를 채취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됨



**결론 : 상담 종결**

- 실종 장애인 등이 가족을 찾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 정보의 경찰서 등록이 일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대구인권증부즈만의 기관상담 이후 희망마을과 보석마을에서 누락된 9명의 생활인 전부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종결함



## 생활인 전원 요청



### ◦ 내담자

- 보석마을(노숙인 요양시설) 생활인 ○○○은 본인 자의에 의해 입소한 사람인데 최근 양호 시설로 전원을 요청하고 있음. 연고자 아들이 있는데 현재 연락두절상태임. 연고자의 동의 없이 전원조치를 하여도 될지 고민됨.

### ◦ 인권옹호부즈만

- 전원에 관련된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함. 생활인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연고자의 동의 없이 생활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전원조치가 가능할 것임. 이 경우, 전원대상 기관 및 전원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임.
- 연고자에게 연락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시설에서 연고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남겨 놓은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전원된 생활인과 연고자와의 연락 재개를 위해 전원된 생활인에 대한 정보를 남겨 놓아야 할 것임.



### 상담결과

- 상담 종결

## 나.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 성추행 가해 혐의 생활인 전원 조치



### ◦ 내담자

- 2024. 6. 19. 희망마을 생활인 ○○○(남, ○○세, 치매)이 보석마을 앞 쉼터 벤치에서 보석마을 생활인 ○○○(여, ○○세, 정신장애 3급)을 추행한 사건이 있었음. 이에 보석마을에서는 해바라기센터에 사건을 접수하고, 이후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대구지방경찰청 서부지청에 장애인강제추행혐의로 송치되고, 이후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2025. 5. 8. 선고예정임.
-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가해생활인의 피해생활인에 대한 사죄와 금전적 합의가 필요하나, 가해생활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음.
- 가해생활인과 피해생활인은 현재 생활 동선을 분리하여 마주치지 않게 분리하고 있는데, 가해생활인은 향후 형이 확정되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낮아, 결국 희망원에서 계속생활하게 될텐데, 피해생활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임. 가해생활인은 합의를 거부하며, 퇴소를 요구하고 있음.

### ◦ 인권옹호부즈만

- 가해생활인의 선고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의미의 사과와 금전적합의 등이 필요할 것이나 가해생활인이 혐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사과와 금전적 합의의 요구가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시설에서는 생활인들이 받아들이는 범위 내에서

-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줄 수는 있으나, 사과나 금전적 합의를 무리하게 요구하여서는 안될 것임.
- 사과와 금전적 합의문제는 민감한 법률적 문제이고, 양측 모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인에 대한 성추행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보호조치를 위해 성추행혐의가 있는 생활인에 대한 전원조치 등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성추행혐의가 있는 생활인이 행위능력자라면 연고자의 동의를 전원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님. 다만, 성추행혐의자라고 하더라도 전원에 필요한 정보나 제반 지원은 시설에서 해주어야 할 것임.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적용하고, 인권지킴이단 등 회의체 등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 상담결과

- 안내 및 대안 제시

## 종사자 고충, 생활인 폭언



### ◦ 내담자

#### 〈종사자 고충〉

- 내담자는 생활인과의 갈등에 대해 ○○○에게 호소를 한 적이 있는데, ○○○은 종사자와의 갈등 해결도 다 종사자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생활인과의 갈등문제가 오로지 종사자의 문제라고 함
- 생활인과 종사자의 갈등문제는 종사자 → 정신건강상담위원 → 관리자(시설장) 등으로 단계별 상담체계가 있었으면 함.
- ○○○가 종사자의 편을 들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나, ○○○의 종사자에 대한 공감과 격려 등의 말은 큰 도움이 될 것임.

#### 〈생활인 폭언〉

- 아름마을 생활인 ○○○는 6.24. 작업장 출근 시 종사자에 대한 폭언(입을 꼬매버릴까?) 등을 하였는데, 아름마을에서는 관련자 회의를 거쳐 직업훈련을 3일간 중단시킨 바 있음.
- 생활인 ○○○는 폭언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진정성은 없어 보임. 인권옴부즈만이 면담을 하여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해주면 좋을 것임.

### ◦ 인권옴부즈만

#### 〈종사자 고충〉

- 인권옴부즈만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와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은 거주자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종사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면 거주자의 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종사자는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감정이 소진될 수도 있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생활인 폭언〉

- 생활인의 종사자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에 대해서는 관련 매뉴얼이 있을 것임.
- 생활인 ○○○은 인권옴부즈만이 면담하겠음.

✓ 상담결과

- 안내 및 대안 제시
- 종사자의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종사자에 대한 폭언 및 사과 등에 대한 사실확인



◦ 내담자

- 내담자는 공장에 출근하여 종이가방에 끈을 끼우는 일을 하며, 월 1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그런데 지난주 종사원 ○○○에게 실수로 무엇을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은 내담자에게 식사가 취소되었다고 하였음.
- 이때 입을 꼬매버릴까 라는 환청이 들려 ○○○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으나, 욕설을 한 적은 없음. 당시 생활인 ○○○와 ○○○이 같이 있었음.
- 이에 내담자의 폭언에 대해 회의가 개최되고, 이후 내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는데, 서약서를 요구하여 서명하였음.
- 내담자는 ○○○이 남편이라고 착각하여 폭언을 하였음.

◦ 인권옴부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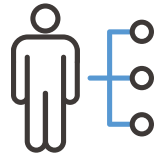
- 내담자에게 ○○○에 대한 사과가 진심인 것을 확인함.
- 내담자가 상기 진술한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나 불쾌함은 없었는지 확인함.
- 내담자에게 내담자의 행복(인권)이 지켜지려면, 종사원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지켜 주어야 한다고 말함. 주위의 사람이 행복해야 본인도 행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 가급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여서는 안되고, 만일에 환청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을 하였다면, 바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함.

✓ 상담결과

- 상담 종결

# 04

##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활동 현황



1. 복지옴부즈만 활동일지 및 사진
2. 인권옴부즈만 활동일지 및 사진
3.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홍보 현황



# 1. 복지옴부즈만 활동일지 및 활동사진



<복지옴부즈만 활동 - 제2회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용산역)>



<복지옴부즈만 활동 - 찾아가는 방문 상담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복지옴부즈만 활동 - 제3회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교대역)〉



〈복지옴부즈만 활동 - 대구사회복지관협회 월례회 참석 (수성못 인근)〉



〈복지읍부즈만 활동 - 대구노숙인지원센터 방문 간담회〉



〈복지읍부즈만 활동 - 제4회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수성구청역)〉

## 2. 인권옴부즈만 활동일지 및 사진



〈인권옴부즈만 활동 - 대구광역시립희망원 현안업무 공유(희망원)〉



〈인권옴부즈만 활동 - 생활인 가족 찾아주기 관련 현안 논의(희망마을)〉



〈인권옴부즈만 활동 - 생활인 인권교육 (아름마을)〉



〈인권옴부즈만 활동 - 생활인 인권교육 (보석마을)〉



〈인권옴부즈만 활동-생활인 인권교육 (희망마을)〉



〈인권옴부즈만 활동 - 생활인 인권교육 (아름마을)〉



### 3.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홍보 현황

####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홈페이지>

#### <두드리스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민원신청 화면>

## &lt;복지옴부즈만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참여 및 홍보&gt;

**붙임1** 상담분야 및 참여기관

상담분야	상 담 내 용	참여기관
지 방 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대 구 시 군 법 무 세 당 관 심 서
국 민 연 금	국민연금 자격·급여 분야, 노후설계 등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소 비 자 상 담	의류, 가전, 통신 등 소비자 피해구제	대 구 시 민 생 경 제 과
생 활 불 편	도로, 교통, 소음, 쓰레기 등 생활불편민원	대 구 시 소 통 민 원 과
사 회 복 지 만 복지옴부즈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주거 등	대 구 도 시 개 발 공 사 서 대 구 시 복 지 부
	복지 고충민원 상담 및 옴부즈만 홍보 등	대 구 시 감 사 관
도 시 주 택	무허가건축물, 재건축, 재개발 등 건축민원	구 · 군 건 축 부 서
보 건 건 강	체성분검사, 조갑주름모세혈관 검사 등 혈압·혈당측정, 지매선별 등 보건상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구 · 군 보 건 소
국 세	재산세(양도외), 부가세 등 국세 전반	대 구 지 방 국 세 청
병 무	병역, 모병,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이행과정	대 구 경 북 지 방 병 무 청
보 훈 복 지	국가유공자 등 보훈 정책	대 구 지 방 보 훈 청
국 민 건 강 보 험	건강보험 자격, 부과, 징수, 노인 장기 요양보험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부 대 구 경 북 지 방 보 험 본 부
생 활 법 률	가사,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대 구 교 통 공 사 법 무 팀
노 무 상 담	근로계약, 고용·산재보험, 노무 관련 전반	대 구 교 통 공 사 법 무 팀
도 시 철 도 민 원	도시철도 불편민원, 제도개선	대 구 교 통 공 사 법 무 팀
전 기 요 금	전기요금 감면제도, 전기절약방법, 자동이체 등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일 자 리	취업알선, 구인상담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사회참여 지원	대 구 시 일 자 리 노 동 정 책 과 대 한 노 인 회 취 업 지 원 센 터 대 구 서 부 고 용 센 터
상 수 도	상수도요금(부과기준, 연체), 노후관 개보수 등	대 구 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금 용 상 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소비자 민원전반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평 생 학 습	대구시민대학 강좌, 평생학습 상담	대 구 평 생 교 육 진 흥 원
학 자 금 지 원	대학생 학자금 및 이자지원, 신용 유의자 지원	한 국 장 학 재 단
범 죄 신 고	형사, 고소·고발, 교통사고 폭력 등	대구지방경찰청지하철경찰대
도 시 가 스	가스안전, 설치 및 이사 등 도시가스관련 상담	대 성 예 너 지 ( 주 )

※ 참여기관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음부즈만 홍보물품 (쿨토시)>



### <음부즈만 홍보물품 (멀티스카프)>



# 05

## 부 록



1. 지방자치단체 ombudsman(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ombudsman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 국가인권위원회법
5. 고충민원신청서 서식



# 1. 지방자치단체 ombudsman(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2025. 8월 기준, 총 100개)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5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7명(상근+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8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0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1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3	서울 (22)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독임제
14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5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6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7		광진구	옴부즈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18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19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0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21		도봉구	옴부즈만	4명(상근)	2년(1회)	독임+합의
22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23		동작구	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합의제
24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5		서대문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6		서초구	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독임+합의
27		성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8명(상근+비상근)	4년(단임)	독임+합의
28		성북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독임+합의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결정	
29	서울 (22)	양천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0		용산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1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2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3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4		종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5	부산 (1)	사하구	옴부즈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36	대구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7		동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8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39	인천 (5)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0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5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1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2		연수구	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3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4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4	광주 (4)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5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6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5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7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8	대전 (5)	대덕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49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0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1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2		유성구	옴부즈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3	울산 (4)	남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합의
54		북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55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6		울주군	구민권익보호관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결정	
57	경기 (25)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8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9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0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1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63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64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5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66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상근)	2년(1회)	합의제
67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10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8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10명(상근+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9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5명(상근+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0		여주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1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72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3		의왕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74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75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76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77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8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상근+비상근)	2년(1회)	합의제
79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합의제
80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81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82	강원 (1)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83	충북 (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84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85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결정	
86	충남 (6)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독임제
87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3명(상근)	2년(1회)	독임제
88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89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90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1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2	전북 (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4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3	전남 (6)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94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95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96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7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98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9	경북 (1)	상주시	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100	경남 (1)	양산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 \* 대구시 자치구

- 동구(옴부즈만/상근 2명), 북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상근 2명), 달서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상근 1명)



##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10.] [대구광역시조례 제4960호, 2017. 5. 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의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복지행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이란 시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인권분야”라 함은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과 연구 및 행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회활동 분야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복지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옴부즈만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한다.

- ②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이하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라 한다)은 각 1명을 두되 지방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복지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제6조 각 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한 복지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복지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3. 복지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5. 복지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6. 복지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7. 그 밖에 복지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②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거주자가 제6조 각 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한 인권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인권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3. 인권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인권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5. 인권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6. 인권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7. 그 밖에 인권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직무관할 제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경찰·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관할기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복지분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

**제7조(자격 요건 등)**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8.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사회복지관련 석사학위 또는 인권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9.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10.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민사회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채용계약, 채용기간 등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보장)**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를 위반하여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이외의 직을 겸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9조(겸직금지)**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법 제2조에 따른 각종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자문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2명,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자문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수당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시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시의 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분야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과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 ③ 고충민원의 신청은 대리인으로도 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이첩)**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해당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 조사방법)**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권고 및 의견 표명)**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충민원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조치결과와 통보)** ① 제16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통보받은 고충의 조사결과를 고충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은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공표 등)** ①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18조 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 사유

② 기타 고충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다.

**제21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민원조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조사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공인의 사용)** ①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등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대구광역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운영상황 제출)** 복지 및 인권옹호부즈만은 매년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으로 임용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개정 2012.5.10 조례 제4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4960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옴부즈만으로 임용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 2022. 4. 2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차.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 삭제 <2021. 5. 18.>**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 6. 9.>

##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의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 ⑤ 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업무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내의 내부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2조(조사의 방법)

-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 [제목개정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①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같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 ⑤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2022. 1. 4.>
-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 ⑦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
-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1. 8. 17., 2022. 1. 4.>
- ⑨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2021. 8. 17.,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 제60조(조사결과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 ② 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1. 4.>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 ⑤ 위원회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 ⑥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 제61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4.>

1. 검사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
2. 위원회가 제59조제6항에 따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2022. 1. 4.>  
[본조신설 2020. 12. 29.]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 · 단체 · 기업 등
-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 · 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 · 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3. 29.]

[제목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 4.>
- ④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2022. 1. 4.>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2. 1. 4.>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2023. 3. 21.>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13.>

- ⑧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2. 13.>
- 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신설 2024. 2. 13.>  
[제목개정 2019. 4. 16.]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6.>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6.>
-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4. 16.>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7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22. 1. 4.]

**제71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②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③ 위원회는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 ④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 제6장 국민감사청구

-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22. 1. 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 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6. 3. 29.]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 [제목개정 2016. 3. 29.]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8장 벌칙

**제86조 삭제 <2021. 5. 18.>**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2019. 12. 10.>

**제88조의2(자료 ·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 ·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9. 4. 16.]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19. 4. 16.]

## 부칙 <제20712호, 2025. 1. 2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58호, 2024. 12. 3.,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2022. 1. 4., 2022. 4. 26.>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 보호소
  -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
-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군무원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6. 2. 3.>
-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위원은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1조 삭제 <2005. 7. 29.>**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5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개정 2022. 1. 4.>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② 징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19.]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5. 19.]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3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 ⑥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19.]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 ⑥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 ⑦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

-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시행일: 2025. 6. 4.] 제26조의2

### 제27조(인권도서관) ①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②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③ 삭제 <2012. 3. 21.>
- ④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2. 3. 21.]

###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군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 7. 29.>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2005. 7. 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 소속공무원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19.]

**제37조(질문·검사권)** ① 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1.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등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0조에서 이동 <2024. 12. 3.>]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제49조의4(전자적 송달 등)** ① 위원회(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할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 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제50조** [종전 제50조는 제49조의2로 이동 <2024. 12. 3.>]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구제 <신설 2022. 1. 4.>**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

위원이 겸직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 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 4.]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전화·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 ②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다.

- ②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등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4.]

## 제5장 보칙 <개정 2011. 5. 19.>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6장 벌칙 <개정 2011. 5. 19.>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1. 4.>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1조(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2. 1. 4.>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④ 삭제 <2020. 3. 24.>

⑤ 삭제 <2020. 3. 24.>

⑥ 삭제 <2020. 3. 24.>

**부칙 <제20558호, 2024. 1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고충민원신청서 서식

5

부  
록

<h3 style="margin: 0;">고 충 민 원 신 청 서</h3>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 0;">년    월    일</p> <p style="margin: 0;">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 인권옴부즈만 귀하</p> <p style="margin: 0; padding-left: 40px;">주 소 :</p> <p style="margin: 0; padding-left: 40px;">성 명 :</p> <p style="margin: 0; padding-left: 40px;">전화번호 :</p> <p style="margin: 20px 0 0 0;">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충 민원을 신청합니다.</p>			
신청의 취지			
신청의 사유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		년    월    일	
기타의 제도에 의한 구제절차 진행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input type="checkbox"/> 무		
대 리 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신청인과의 관    계	(접수인)

## 2025년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보고서

발 행 일 2025년 12월  
인 쇄 일 2025년 12월  
발 행 처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01동 1층  
전 화 053-803-6234  
홈 페이지 <http://www.daegu.go.kr/ombudsman>

이 보고서는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운영상황 제출)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활동실적을  
대구광역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